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인과관계의 판단(4호 판결 관련)

2023. 09. 04.

기획조정본부 법무지원팀 오주연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4호 판결이 2023. 8. 25. 선고되었습니다. 한국제강(주) 사건에 이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심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두 번째 사건으로, 법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원청인 만덕건설(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학자와 법률가들이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선고된 세 건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에서 법원이 인과관계 문제를 엄밀히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판결문에 대한 비판의 이유 중 하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4호 판결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세 건의 판결에 비추어 비교적 자세히 판단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4호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4호 판결에서는 실제 사고를 유발한 근로자(굴착기 운전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과 논리적 흐름 역시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4호 판결의 인과관계 판단과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내용을 분석하여 첨부하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사안의 개요

- 만덕건설(주)(이하 “만덕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총 공사금액 155억 2,150만 원에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를 (주)대덕건설(이하 “대덕건설”)에 총사금액 약 23억 4,000만 원에 하도급하였음
- 대덕건설 소속 근로자인 D는 위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마침 굴착기 후방 통로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대덕건설 소속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굴착기를 회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가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2. 판결요지 (만덕건설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각 검사 항소, 나머지 피고인들 2023.9.2. 판결 확정)

- 만덕건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만덕건설 및 대덕건설 각 현장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대덕건설 굴착기 운전자 D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 만덕건설에게 벌금 5,000만 원 / 대덕건설에게 벌금 1,000만 원

3. 4호 판결의 시사점

(1) 인과관계의 판단

- ‘인과관계’는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별할 수 없음”(형법 제17조 참조)
-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달리, 의무위반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사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함. 따라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함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가 산안법상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두 단계의 인과관계 판단을 통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 즉, (i)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산안법상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있

는지 여부, (ii) 경영책임자에게 위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의 원인이 된 중대재해처벌 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의 순차적 판단을 거치게 됨

- 법원은 1호~3호 판결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인정이나 실시 없이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

그런데, 4호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과관계 인정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판단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법원의 판단 논리의 핵심은 “대표이사가 (위반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에 기한 것이므로,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판시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 ① 본건 피해자 사망의 주요 원인은 근로자 출입 통제 의무 또는 유도자 배치 의무 위반인데, 유도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비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굴착기 작업반경 내 공간에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되지 못하게 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발생하리라는 점은 통상 예견가능함
-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약 10m 폭의 좁은 대지에 굴착기, 덤프트럭 등 대형 장비가 작업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쪽 면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굴착기가 붐대를 회전할 경우 근로자가 굴착기에 충돌되거나 담장 사이에 끼일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음. 이에,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산업재해 대응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근로자들 중 누군가는 매뉴얼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랬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 ③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였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보다 충실하게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 ④ 만덕건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았고, 이러한 안전·보건의식의 부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이어졌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을 초래함

(2) 굴착기 운전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행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야 함. 4호 사건에서 법원은 굴착기 운전자 D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전제하였음
 - ①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터파기 작업 외에도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는 용접 및 토류관 제작 등 여러 작업이 동일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굴착기 작업반경 내 공간을 통행하다가 굴착기에 부딪칠 위험이 있었음. 또한 굴착기 후방 이동통로 한쪽에 담장이 있어, 작업자가 통로로 지나갈 경우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었음
 - ② 그러므로, 굴착기 운전자에게는 작업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작업할 때 위험한 장소로 작업자들이 통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건설기계 유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관계자에게 유도자 배치를 요구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③ 위와 같이 굴착기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굴착기를 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 이처럼, 법원은 공사현장의 굴착기 운전자에게는 작업반경 내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의 통행을 막고, 유도자가 배치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4. 결론

4호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만덕건설과 만덕건설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고, 나머지 대덕건설 법인, 만덕건설 및 대덕건설의 각 현장소장 및 굴착기 운전자에 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않아, 2023. 9. 2.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음

항소심에서 검사는 만덕건설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이 실제적 경합 관계에 있어, 1/2 범위 내에서 형벌을 가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만덕건설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또는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의 양형 주장을 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피고인은 어느 누구도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 판단이나 굴착기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변동의 여지가 없을 것임. 이에, 본 4호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인과관계나 실제 행위자인 근로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됨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서 경영책임자는 사고의 발생이 자신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또는 제3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통상 예전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을 할 것이며, 그런 경우 인과관계 판단이 형사처벌의 유무를 가리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됨. 끝.